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1. 3.

금 융 위 원 회

1. 반환지원 대상 거래의 범위 확대(안 제3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용 대상인 ‘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’에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통한 거래를 포함

현행	개정법('21.7.6일 시행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신 설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9. “착오송금”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)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를 ‘자금이 이동된 거래’에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와 유사하고 최근 이용규모도 증가

-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금으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2. 반환지원 대상 거래의 범위 확대(안 제3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‘전자금융거래법’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‘자금이체 금융회사등’으로 정하고,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용

현행	개정법('21.7.6일 시행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신 설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0. "자금이체 금융회사등"이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<참고>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보법 개정 주요 내용

-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'21.7.6일부터 시행될 예정
-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(사후정산 방식)
- 다만,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,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대상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지정 (§3조의2)
 -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*를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규정

*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증권금융회사, 금융투자회사, 종합금융회사, 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우체국

- 전자금융회사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(총 55개사 중 9개사)이고 변동 가능하므로, 예보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,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와 유사하고 최근 이용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, 동 선불전자지급업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3.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의 차입방법 구체화(안 제1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,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
- 예보가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절차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

현행	개정법('21.7.6일 시행)
제26조(차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한국은행법」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, 한국은행, 부보금융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(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)만 할 수 있다.	제26조(차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----- ----- -----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,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·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*로 동일한 기관**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

*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차입

** 한은, 부보금융회사, 저축은행중앙회, 증권금융회사, 수출입은행, 자산관리공사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차입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4.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(안 제1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업권별 특성·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예금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‘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’이 아닌 ‘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’을 고려하여 예보위에서 정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예금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5.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6제1항제19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보호법(제24조의2)은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) 중 주민등록번호에 한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처리 근거를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착오송금반환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취인* 뿐만 아니라 송금인에 대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
* 착오송금 수취인의 고유식별정보는 채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처리근거를 법률에 마련(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)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6. 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체화(안 제24조의7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정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함

현행	개정법(21.7.6일 시행)
<p><신 설></p>	<p>제39조의2(매입대상 등)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,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.</p>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예보가 착오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
 -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,
 -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,
 -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
-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은 예보위원회에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허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및 예금보험공사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예금보험공사가 사후적으로 매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①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3조의2)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(신설)

개정前	개정後
<p><신 설></p>	<p>제3조의2(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)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전자금융거래 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.</p>

②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3조의3)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지정(신설)

개정前	개정後
<p><신 설></p>	<p>제3조의3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법 제2조제 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(이하 ‘자금이체 금융회사등’이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,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, 종합금융회사 3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 8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9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0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1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3조의2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

③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15①·③) 지원계정의 차입방법 구체화

개정前	개정後
<p>제 15조(차입의 방법 등) ①공사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 <u>계정의 부담으로</u>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<u>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</u>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·운영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 15조(차입의 방법 등) ①----- ----- <u>계정</u> <u>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u>예금</u> <u>보험기금,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4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18)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

개정前	개정後
<p>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<u>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. 다만,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(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----- ----- ----- <u>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(생 략)</p>

⑥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24조의7) 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체화(신설)

개정前	개정後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4조의7(매입계약의 해제) ① 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</u> <u>2.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</u> <u>3. 신청일 이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</u> <u>4.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</u> <p><u>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</u></p>